

[사 건 명] 행심 2018 - 7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무효확인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1. 2018. 9. 12.경 점심시간 무렵 학교 복도 게시판, 벽, 창문 등에 붙어 있는 스티커 관련 포스트잇을 떼고 있는 2학년 청구인(◇◇◇) 및 학생들(□□□, △△△, ■■■)에게 포스트잇을 떼지 못하게 막은 3학년 피해 학생(●●●)이 둘러싸인 상태로 10분 정도 다툼이 일어났고, 청구인 포함 4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학생이 위압감을 갖게 되었다.

2.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학생은 화장실 및 위클래스에서 청구인 및 관련

학생들을 마주칠 때마다 조롱당하고 위협을 느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욕설과 폭력,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 이후 이 사건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어 처리를 미루다가 동영상 발견되어, 맨 앞줄의 학생 4명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2018. 10.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학폭위 회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0. 28.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 조치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본 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1. 청구인측은 2018. 9. 12. 점심시간에 스쿨미투 관련 포스트잇을 떼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논쟁하였을 뿐, 증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폭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한 이 사건은 부당하며, 진술서에도 폭행과 욕설은 없었다고 반복해서 썼으며, 많은 학생들이 구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2018. 10. 5. 학폭위 회의 개최 4시간 전에 피청구인에게 심의 참석 가능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사안도 모른 채 학교에 갔으며 전날 전화를 받거나 서면통지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는 학폭위 회의를 기다렸으나, 교감선생님과 학폭

위 담당교사가 와서 피해학생(●●●) 측이 가해자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가버렸다고 학폭위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 못한 사과와 피청구 인측의 황망함도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8. 10. 23. 학폭위 회의를 개최하였고 5시 30분부터 시작되던 자치위원회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열렸으며 12시가 넘어서 변론이 끝난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3. 욕설과 폭행이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상황에 청구인은 상처받았으며,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와 함께 와서 변론하였기에 상황이 바뀐 것이라면, 이 세상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라고 아이는 상처받으며 살아야 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난 것은 아닌지 진정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 사건에서 3학년 피해학생(●●●)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어 계속 미뤄지는 과정에서 2018. 10. 5. 학폭위에서 이 사건도 빨리 처리하고자 관련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였고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학생 어머니가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연기하게 되었으며, 이후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피해학생이 4명의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2018. 10. 23. 학폭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서면사과 조치는 여러 명의 2학년 학생들이 한명의 3학년 학생을 둘러싸고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조치이며, 청구인은 욕하는 소리만 들었고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가해 학생 중 한 명(■ ■ ■)이 4명 모두 욕을 했다고 했으며 피해학생도 4명의 학생이 모두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접촉 금지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나 2018. 9. 12. 사안 발생 이후 피해학생이 청구인 및 그 친구들을 마주쳤을 때 2학년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웃는 말이나 눈치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학생이 2학년 가해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까지 한다고 하여 조치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2018. 9. 12.경 점심시간 무렵 학교 복도 게시판, 벽, 창문 등에 붙어

있는 스킨미투 관련 포스트잇을 떼고 있는 2학년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 ■■■)과 3학년 ○○○ 학생과 위 포스트잇을 떼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언쟁이 있었다.

(2) 이러한 언쟁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들이 언쟁이 있는 현장에 몰려와서 이 사건 관련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도 서로서로 말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학생도 있었다.

(3)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위 3학년 ○○○ 학생은 위 언쟁이 있던 현장에서 욕설과 폭력을 당했으며, 여러 가해학생들에게 둘러싸여서 위압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당초 2018. 10. 5. 학폭위 회의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폭위 회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무산되었고, 이후 위 언쟁이 있던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이를 근거로 가해학생을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학생이 지목된 후 2018. 10. 23. 학폭위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가해학생 중 ■■■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인이 당시 언쟁 현장에서 3학년 ○○○ 학생에게 욕을 했다고 인정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학폭위 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당초 학폭위 회의가 예정되었던 2018. 10. 5.경 회의 개최 4시간 전에 전화상으로 연락이 왔으며, 어떠한 서면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가 회의가 무산되었고, 당시 학폭위 개최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시 2018. 10. 23.경 학폭위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2018. 10. 23.경 개최된 학폭위 회의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제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조치 원인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쿨미투 관련 포스티잇을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3학년 ○○○ 학생이 포스티잇을 떼는 여러 명의 2학년 학생들에게 복도계시판 벽쪽에 둘러싸인 상태로 학생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2학년 학생들 중 4명의 학생(□□□, △△△, ◇◇◇, ■■■)이 ○○○ 학생에게 욕설을 하였고, 3학년 ○○○ 학생 혼자서 2학년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위압감을 갖게 되었음'이라는 것이고, 이후의 사정에 관한 ○○○ 학생의 피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원인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조치원인사실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인이 위 조치원인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학년 ○○○ 학생에게 위와 같은 언쟁 현장에서 욕설을 하였다거나 위압감을 갖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위와 같은 언쟁이 있는 후 3학년 ○○○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를 한 이후 이 사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4명(□□□, △△△, ■■■ 및 이 사건 청구인)의 학생들이 2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2018. 9. 28.자 및 같은 해 2018. 10. 11.자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 3학년 학생이 위 언쟁 현장에서 욕설과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서 그 무렵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러한 이유로 당초 예정된 2018. 10. 5. 학폭위 회의가 무산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음)

③ 이후 다른 학생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해 가해학생을 지목하였다고 하지만, 위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관련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20여명 이상 모여서 서로 각자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하며, 촬영 도중에 누군가 악을 쓰기도 하는 등 현장 소리가 소음처럼 들릴 뿐 당시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위 ○○○ 3학년 학생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과 사이에 어떠한 말이 오고 간 것인지, 또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점

④ 2018. 10. 23. 개최된 학폭위 회위에서는 학폭위 위원들은 언쟁 현장에서 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 사건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 학생만이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억을 해달라고 학폭위 위원이 묻자, “네 그런 것 같아요”라고 답변을 하고, 이어서 위 ■■■ 학생의 보호자는 “■■■ 학생이 중국에서 온지 2년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 학생은 위 ①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2차례에 걸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욕설이나 폭력은 하지 않았다

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였음에 반하여 이러한 2차례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 개최된 학폭위 회의에서는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욕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다면 당시 ■■■ 학생이 이와 같이 2차례의 사실확인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다른 가해학생들도 다 같이 욕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시 이 사건 청구인이 ○○○ 3학년 학생에게 어떠한 욕설을 했다는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점.

⑤ 오히려 위 ■■■ 학생이 이 사건 발생 후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작성한 2018. 9. 28.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 3학년 학생은 당시 '■■■' 학생과 언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서 ○○○ 3학년 학생이 위 ■■■ 학생과의 언쟁 중에 욕설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 학생은 중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당시 ■■■ 학생과의 언쟁을 보고 욕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4명의 학생과 ○○○ 3학년 학생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당시 장소는 공개된 복도 게시판 부근이었고, 이 사건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 3학년 학생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했다는 점을 확인 할 자료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이 ○○○ 3학년 학생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는 이 사건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학폭위 회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만 그 정도가 반드시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심판에서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심판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피청구인이 2018. 10.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재결한다.